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- 특허·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고시

◇ 제·개정 이유

- 재난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 특허법('21. 6. 23. 시행)의 개정 사항과,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근거법 변경을 고시에 반영하고, 우선심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◇ 주요내용

- 가. 재난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 특허법 시행에 따라 우선심사 대상을 추가(제4조제5호, 별표1,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5호서식)
- 나.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근거법이 「과학기술기본법」에서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으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(제4조제2호바목)
- 다.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 의뢰함을 이유로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미비한 규정을 보완(제4조제4호)